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와 인신매매

박 정 애*

머리말

- I. ‘수양녀 계약’과 미성년 여성 매매
 1. ‘수양녀’와 입적(入籍) 문제
 2. ‘수양녀 계약’과 전차금
- II. 인신매매 문제로서 ‘수양녀’ 비판와 식민권력의 대응
 1. 공사창 계약 구조와 ‘수양녀’ 문제
 2. 국제연맹 여성아동매매 조사위원회의 양자문제 조사와 일본의 대응

맺음말: 지속되는 미성년 여성 착취

국문초록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제도’는 법률과 빈곤 문제, 공사창 제도와 가부장제 및 공권력의 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식민지 공권력과 언론은 이를 ‘조선 고래의 폐풍’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이다. 19세기부터 국제사회와 일본에서 양녀를 매개로 한 인신매매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이자 근대 인권의 문제로 인식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들은 그러한 공론장에 올라오지 못했다. 총동원체제가 시작된 후 식민지 공권력은 1939년부터 전시 인력 확보 차원에서 수양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방’ 정책에 나섰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전했던 명분만큼 ‘인신매매되는 수양녀들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았다. 경찰의 ‘해방’ 정책으로 인해 여성들은 전쟁 지역에 보내졌고 현지 일본군과 영사관 관계자들도 ‘인신매매되는 수양녀들의 운명’을 방치했다. 이 과정은 무법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sanyang@nahf.or.kr). 유익한 의견을 보내주신 심사자 세 분께 감사드린다.

가운데 방치이기도 했고,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기도 했으며, 합법의 명분 속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도 했다.

주제어 : 수양녀, 인신매매, 국제연맹 여성아동매매 금지, 전차금, 일본군 '위안부'

머리말

1940년 9월 7일, 경성의 종로경찰서와 본정경찰서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수양녀 제도 폐지’를 단행했다. 종로의 수양부모 110명과 본정의 25명이 각각 수양녀 181명과 80여 명을 ‘해방’시키기로 약속했다. 『매일신보』는 “재래의 좋지 못한 관습과 폐풍으로 전래하여 오던 악(惡) 제도를 단연 타파”, “노예적 폐풍인 수양녀 문제는 완전히 우리 사회로부터 사라져”, “경찰에서 영단적 해방을 명령”했다는 식으로 찬사 일색의 논평을 내놓았다.¹⁾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재래의 노예적 폐풍인 나쁜 제도’에 대해 공권력이 1940년이 되어서야 개입했다는 것이 저렇게 찬사 받을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저 기사들은 그간 ‘수양녀 제도’로 인해 여성들이 노예적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권력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식민지 조선 출신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에는 수양딸의 형식으로 남의집살이를 했다가 기생권변에 있다가 끌려갔다는 구술을 한 경우가 적지 않다. 김군자는 조선인 순경의 수양딸로 있다가 1942년 수양부의 명령으로 만주에 보내졌다고 했고²⁾, 이용녀는 부친에게 ‘300원’을 주고 자신

1) 『매일신보』 1940.9.8. 「수양녀 해산의 단(斷)」; 『매일신보』 1940.9.11. 「수양녀 해방으로 흡혈귀들 발악」; 『매일신보』 1940.9.20. 「폭로된 청춘지옥」

2) 김군자 구술, 조희혜란 정리, 「순경 집 수양딸 노릇하다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1999, 77-79쪽.

을 수양딸로 삼은 술집주인이 1942년 일본에 가서 빚을 갚으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도착한 곳이 버마의 위안소였다고 했다.³⁾ 조윤옥⁴⁾과 홍애진⁵⁾, 김학순⁶⁾ 등은 권번의 수양딸로 있다가 만주나 중국에 가서 '위안부'가 되었다.

이 가운데 최초의 공개증언으로 이름이 높은 김학순은 '기생학교의 양아버지'와 중국에 갔다가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도 몸이 팔리는 딸은 매춘업자의 양녀 형식을 밟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김학순의 경우도 전형적인 '몸 팔기(身売り, 미우리)' 경우였고, 중국에서 '위안부'가 된 것도 양부에 의한 '되팔이(轉賣)'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죄할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⁷⁾

피해자들이 '수양딸'에서 '위안부'로 이어지는 자신의 삶을 '본인의 의사에 반한 피해'로 인식하는 반면,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매춘업자의 양딸'은 '몸을 파는 매춘부'이기 때문에 당대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시기 일본과 조선에서 존재했던 '양딸'의 성격이 동일할 것이며, 이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춘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정되고 있다. 이렇게 역사수정주의자들은 피해자의 기억을 '교정'하여 현재의 역사인식을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고자 한다.

3) 이용녀 구술, 고희정 정리, 「이제 여기서 죽는가보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1993, 217-219쪽.

4) 조윤옥 구술, 서은경 정리, 「조윤옥」,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2003, 68-69쪽.

5) 홍애진 구술, 박선영 정리, 「얼굴이 예뻐서 남보다 먼저 팔려나갔다」, 『(50년 후의 증언)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5, 44-47쪽.

6) 김학순 구술, 이상화 정리, 「되팔이하기조차 싫은 기억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1993, 34-37쪽.

7) 秦郁彦,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選書, 1999, 180쪽.

이글의 목적은 식민지 조선에 존재했던 ‘수양녀 제도’의 실체를 추적하는 것이다. 당대 언론과 공권력의 언급 속에 보인 ‘수양녀’와 ‘제도’라는 조합은 어떤 맥락에서 가능했던 것일까.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는 일본과 동일한 법적 지위와 성격을 가졌을까. 일본에서 ‘매춘부의 양딸’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식민지 경찰이 1940년에 ‘수양녀 해방’을 단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위안소로 끌려가기까지 ‘어린 나이에 양딸로 보내져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는 식민지 조선의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떠한 맥락에 놓여있을까. 식민지 시기 인신매매 관계 자료와 피해자의 구술 가운데 심상치 않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수양녀’라는 말이 이글을 쓰는 출발점이 됐다.

이 주제를 다룬 기존 연구로는 공창제 하의 인신매매 메커니즘을 분석하면서 ‘수양녀 해방’ 문제를 짧게 다룬 박정애의 연구가 있다.⁸⁾ 그는 법적으로나 경찰 단속 차원에서 여성매매를 방임 또는 조장하고 있던 공권력이 이례적으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1940년의 ‘수양녀 해방’ 조치이고 이는 총력전체제의 인적 확보 차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총력전체제 이전에 인신매매의 맥락에서 수양녀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고, 제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검토하지는 않았다.

일본권번의 조선정착 과정의 식민지적 특성을 살펴본 허연희는 일본예기의 계약방식의 하나로서 ‘코가이(子育)’를 지적하면서 양녀문제를 언급했다.⁹⁾ ‘코가이’는 어린 여성을 고용하여 일본예기로 키우는 방식인데, 이는

8) 박정애, 「일제침략기 인신매매의 구조와 성격」,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의 이념』, 경인문화사, 2010, 310-312쪽.

9) 許娟姬, 「日本券番の朝鮮定着と日本芸妓の存在方式」,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3), 2014, 100쪽.

또다시 어린 여성이 고용주의 호적에 입적하는 '연기양녀(年期養女)'와 입적하지 않는 '연기코가이(年期子育)' 방식으로 나뉜다. 어느 쪽이나 예기가 되기까지 고용주가 들이는 비용은 여성의 빛이 된다. 허연희는 재조선 일본예기의 존재 형태가 일본의 예기나 조선의 기생과도 다른 식민지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번조직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예기 계약과정의 양녀문제는 분석하지 않았다.

한편 10살 전후의 여성 아동들이 수양녀라는 명목으로 남의집살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주제는 '가사사용인'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로는 강이수, 서지영, 이아리, 소영현의 성과들이 있다.¹⁰⁾ 이들은 모두 식민권력의 가사사용인 범주에 포착된, 근대 임금 노동자로서의 여성노동 문제에 한정하여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남의집살이 또는 예비기생 역할을 하는 수양녀는 가사노동에 사역되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임금노동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수양녀 입적'이라는 말보다 '수양녀 계약'이라는 말과 함께 신분이 이동되어 근대적 고용관계 안에 얽혀있기도 하였다.

이아리는 일제 초기 가사사용인의 출현 문제를 살펴보면서 조선시대 10살 남짓의 노비, 특히 여성 비자(婢子)가 가사 노동에 사역되었다가 근대의 고용-피고용 관계의 임금노동자로 전환되어간 부분을 지적했다.¹¹⁾ 수양녀는 이러한 근대적 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또는 의도적으로 전근대적 존재로 남

10) 강이수, 「일제하 근대여성 소비직의 유형과 실태」, 『페미니즘 연구』 5, 2005; 서지영, 「식민지 도시공간과 친밀성이 상품화」, 『페미니즘 연구』 11(1), 2011; 이아리, 「일제하 '가사사용인'의 등장과 그 존재 양상」, 『한국사론』 60, 2014; 소영현, 「1920-30년대 하녀의 노동과 감정: 감정의 위계와 여성 하위주체의 감정규율」, 『민족문화사연구』 50, 2012; 서지영, 「식민지 조선, 하녀들의 공간과 친밀성의 함의들」, 『두 조선의 여성: 신체·언어·심성』, 혜안, 2016, 121-148쪽.

11) 이아리, 「일제하 '가사사용인'의 등장과 그 존재 양상」, 608쪽, 625-626쪽.

겨진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 이글에서 주목하는 점은 식민지를 발판으로 근대 국가를 구성해가는 제국주의 국가권력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반(半) 근대적인 존재로서의 수양녀의 성격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 근대성과 탈식민주의 논의에 개입하고자 한다.

이글에서는 여성의 성을 활용하여 ‘국익’을 도모했던 제국주의 일본의 정치적 의도 속에서, 일본과 조선의 가부장제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활용 또는 결합되어 ‘수양녀 제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제기 속에서 일본과 조선의 ‘양녀’ 문제에 대해 일본과 식민권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1940년 공권력의 ‘수양녀 해방’ 조치를 점검하면서 ‘양녀’를 매개로 한 인신매매 메커니즘에 대하여 당대의 정부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글에서는 ‘양녀’와 ‘수양녀’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수양녀라는 표현이 두드러지게 사용되면서도 그것이 국제사회나 일본의 양녀 문제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I. ‘수양녀 계약’과 미성년 여성 매매

1. ‘수양녀’와 입적(入籍) 문제

종법제에 근거하여 부계혈통 계승을 원칙으로 했던 조선사회에서는 엄격한 양자제도를 실시했다. 곧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만 1인에 한하여 양자를 들일 수 있었으며 이성(異姓) 양자는 불가능했다.¹²⁾ 이를 조선에서는 입후법(入後法)이라 불렀으며, 입후와 관계없는 수양(收養)이나 시양(侍養)은 입

12) 문용주, 「한국의 양자제도 연구」, 『법정논총』 6, 1958, 82쪽.

양의 목적이나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만 있으면 성립될 수 있었다.¹³⁾ 20세기에 들어와 일제 식민권력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하여 일본식 가족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¹⁴⁾ 조선의 호적(戶籍)을 확정하여 가(家, 이에)의 범위를 정하고 그 안의 인적 자원을 파악하는 한편, 가의 대표인 호주(戶主)를 통해 사회구성원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식민권력은 1909년 3월 「민적법(民籍法)」과 「민적법 집행 주의사항(民籍法執行心得)」을 공포하여 호주와 그 혈연자를 중심으로 호적을 등록하게 하였다. 그리고 1912년 3월에 공포한 조선민사령 제11조를 통해 조선의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을 '관습'에 의거하여 정하도록 하였다.¹⁵⁾ 이후 조선의 법률적 가족관계에서 입양은 입후, 곧 가계 계승 차원에서만 인정되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수양이나 시양은 식민지 관습법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¹⁶⁾ 이 때문에 식민지 시기 양녀 입적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¹⁷⁾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 균열을 내는 1926년의 신문 기사가 있다.

-
- 13) 3세 이전 아이를 양자녀로 들이는 경우 수양이라 칭했고, 3세 이후의 경우에는 시양이라 말했다(조혜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양녀(養女) 화소의 양상과 의미, 『동서인문학』 60, 2021, 78쪽.) 식민지 조선에서는 수양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14)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식민주의와 가족·법·젠더』, 동북아역사재단, 2021, 36-37쪽.
 - 15) 朝鮮總督府, 「制令 第7號 朝鮮民事令」, 『官報』 465, 1912.3.18.
 - 16)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155쪽.
 - 17) 이봉은 1960년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특징을 구법(舊法)에서 양자는 남자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신민법은 남녀 구별하지 않고 양자 자격을 준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이봉, 「현행 한국 양자법의 몇 가지 문제점」, 『법학논문집』 3, 1976, 14쪽.) 최근의 관련 연구들도 식민지 시기 가족법의 입양 문제와 관련하여 양녀의 입적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255쪽;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155-162쪽)

[임씨가: 필자] 딸을 아무 의심 없이 그[김순명: 필자]에게 수양녀로 보냈더니 재작년 3월에 김순명은 심복회를 민적에 자기 딸로 만들어 놓고 350원 돈을 받고서 부대 화천정 오창근에게 작부로 팔아먹은 결과…….¹⁸⁾

1924년 3월 김순명이 수양녀를 자기 민적에 넣고 친권자의 자격으로서 양녀를 작부로 팔았다는 내용인데 기사대로라면 양녀 입적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할 수 없다.

식민권력의 조선 관습에 대한 인식에서 양자는 부계혈족의 남자만 가능했으며¹⁹⁾, 이러한 해석을 반영하여 1912년 조선민사령 제11조를 제정하였다. 그런데 1921년과 1922년에 일본 민법을 일부 의용하여 제11조를 개정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관습에 의거하지만, 혼인 연령이나 재판의 이혼, 인지, 친권, 후견, 보좌인, 친족회, 상속의 승인 및 분리에 관한 규정은 이 제한에 있지 않다’고 변경하였다. 개정 배경으로는 ‘관습적인 혼인이나 결연(緣組, 엔구미) 등 신분의 법률행위는 대체로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 성립 및 효력을 인정했는데, 이 사실을 다룰 때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윤이나 읍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²⁰⁾

더 자세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넘기겠지만, 1926년의 양녀 입적 기사도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개정을 배경으로 나올 수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의 조선민사령 개정은 조선의 가족관계를 일본의 민법에 더욱 가깝게 하

18) 『조선일보』 1926.4.14. 「수양녀로 보냈는데 작부로 팔아먹어」

19)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적 정책』, 255쪽. 이승일은 1911년의 민사 사건 관례와 민사 관습 회답 사례를 근거로 양자는 부계혈통의 남자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가 조선민사령이 제정·개정되는 이전 시기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 1921년과 1922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에 관해서는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133쪽 참조.

는 방향이었고, 일본 민법에서는 양녀 입적이 가능했다. 그리고 조선민사령의 제2차 개정과 비슷한 시기 「조선호적령」을 공포하고 1923년 7월 1일 두 개의 법령을 동시에 시행하여 가(家)에 속한 개인의 신분을 공증하도록 하였다.²¹⁾

이처럼 1920년대에 들어와 양녀의 입적도 가능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가 사회적 논의 대상이 될 정도로 눈에 띄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법적 입양 문제는 주로 양자의 가계 계승이나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적(籍)을 달리하는 자가 조선인 여성을 양녀로 들이는 경우는 국제법에 따라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²²⁾, 일본인이나 중국인의 조선여성 입적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수양녀 계약'과 전차금

식민지 시기 언론 보도를 보면 수양녀 관행은 '노예적 폐풍'으로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조선의 나쁜 관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양딸로 가는 여아는 대개 부모가 없거나 불연(不然)이면 빈민의 딸이다. …… 수양딸들은 10세 전후에 남의 집에 가면 이름 없는 종 노릇을 하다가 혼기에 이르면 주인은 수양 사윗감으로 남자를 입가시켜서 부부를 만

21) 홍양희에 따르면 '호적'과 '민적'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식민지배 초기 '호적'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 '호적'대신 '민적법'이란 용어가 쓰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호적 등제는 각종 역과 조세를 부담한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1922년에 이르러 이러한 이미지가 희미해지면서 일본 호적법과 같이 '조선호적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56-57쪽) 이를 배경으로 민간 사회에서는 '호적'과 '민적'이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이는 언론 보도에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22) 『조선일보』 1925.7.1. 「5월에 남의 딸을 뺏어, 이상한 일인의 행위」; 『조선일보』 1929.6.22. 「민법사상 희유의 묘령미인 가처분 소, 조선어머니 딸인가 중국인 수양녀인가」

들어 5,6년을 두고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남의 곁간에 세간을 내어주면 평생 가난에 놀리어 사는 것이다. 보수도 주지 않고 수양딸이라는 미명 하에 인녀를 노예 취급하는 것은 인도에 부당한 행위다. 악덕이다.²³⁾

곤궁한 가정에 자식은 많아 먹여 기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부모로서 내다버리거나 팔아먹을 수도 없어 남에게 수양녀로 주는 실례가 가난한 조선 풍습에는 허다한 일이다. 따라서 수양녀라는 문자는 좋건만 최근에 와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들 수양녀의 운명은 기생 아니면 작부 매음 등 결국은 화류향에 전전매매가 되어 일생에 몸을 망치고 마는 일이 많다²⁴⁾

수양녀 문제를 다루는 공론장의 공통된 인식은 수양녀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도 보이듯이 조선에서는 예로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 곤란하면 딸을 남의 집에 보내고, 이 딸들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는 대가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했다. 이들은 대개 10세 전후의 어린 나이에 보내졌는데, 이즈음 되면 ‘남의집살이’가 가능한 연령이 되었다는 사회인식이 있었던 듯 하다. 곧 생존에 필요한 돌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기도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가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며 ‘말귀’를 알아들어 지시에 따를 수 있는 나이라는 인식이다. 10세 전후 아이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을 명분 차원에서 우선 공유하고 그 이면에 있는 무임 노동 사역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면서 ‘수양부모-수양녀’라는 말이 형성된 것이다.

식민지기 언론에서 사건화 되어 드러나는 수양녀 문제는 학대나 노동착취, 강간, 성매매 강요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명색이 부모로서 수양녀를 학대하고 혹사시키는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탄식하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10살 수양딸을 조금도 수양녀로 대접하지 않고 마치 종같이 부

23) 『동아일보』 1932.12.26. 「명색 수양녀」

24) 『조선일보』 1939.3.5. 「불법 계약에 유린된 수양녀의 운명 기구」

려먹는 수양모'²⁵⁾에 대한 기사나 '사랑하는 딸을 수양녀로 주고 곱게 양육되고 있겠거니 찾아갔더니 흘웃만 걸치고 얼굴도 수척하여 분노한 친아버지'의 사연²⁶⁾과 같은 것들이다. 11살에 가시자시키업자(貸座敷業者)의 양녀가 되어 지내다가 16살에 '밀매음'을 강요받은 사건을 두고는 자신을 "친자식 같이 사랑하던" 업자를 "친부모와 같이 섬기어 오던" 양녀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학대를 받아 "항상 뼈에 사무친 생부모가 그리워"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²⁷⁾는 표현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양녀가 '밀매음'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경찰로부터 구류처분 5일을 받는 것으로 종결된다.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된 것이다. 합법적 성매매 영업(가시자시키업)을 하는 업자가 관할 경찰서에 창기 등록 없이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 더욱이 식민지 조선에서 창기 등록은 17세 이상 가능했으므로 16세의 양녀가 불법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건은 업자의 위법성, 경찰 조치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기사의 초점은 수양부로부터 학대받고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수양녀의 비극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난은 수양녀를 매개로 한 부조리한 착취구조나 범죄자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친부모를 잃은 수양녀의 운명 같은 것으로 자연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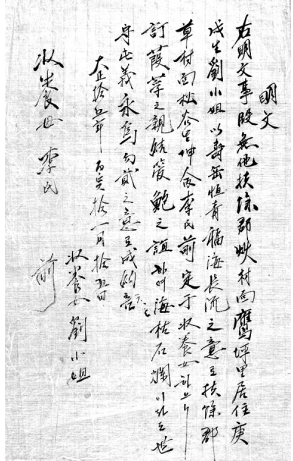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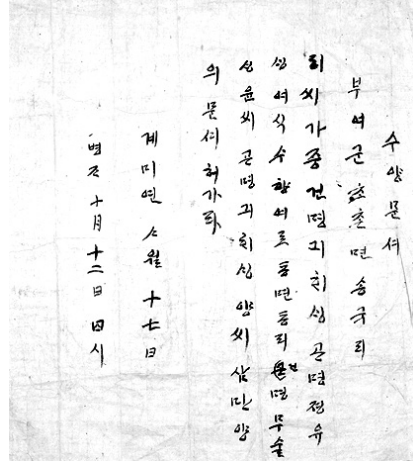
수양녀는 일반적으로 입적이 아니라 수양문서를 작성하여 들었다. 법의 바깥에서 수양 관계를 맺고도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관습적 제도'가 공인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양녀를 지배하기 위해 굳이 입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25) 『동아일보』 1922.7.6. 「실녀(實女)를 인도하라고 친부모가 소송」

26) 『조선일보』 1925.1.18. 「애녀(愛女)를 찾아주시오, 수양녀로 주었더니 학대만 하여」

27) 『조선일보』 1928.4.2. 「세상에 나면서 생부모 모르고 독장(毒杖) 하에서 매음을 강제!」

[자료] 수양문서

<p>자료</p>		
<p>자료명</p>	<p>1926년 유 씨를 이 씨 부인의 양녀로 삼는 문서</p>	<p>1943년에 이 씨 집안의 딸을 윤 씨 집안에 수양딸로 보내는 문서</p>
<p>설명</p>	<p>수양녀 윤 소저가 수양모 이 씨에게 약속하는 형태임. 돈에 대한 언급은 없음</p>	<p>이 씨와 윤 씨 집안 사이의 약속을 허가하는 형태임. '삼만냥'이 거래됨</p>
<p>소장 및 출처</p>	<p>[소장] 국립한글박물관, [출처] 전국박물관 소장품 검색 e뮤지엄(emuseum.go.kr)</p>	

위 자료를 보면, 수양부모와 당사자 또는 수양부모와 친부모 사이에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양자의 서명은 없다. 또 금전 거래 여부와 내역, 수양녀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양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어떠한 법적 조치도 없이 수양녀의 미래는 전적으로 수양부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는 일본 내지에서 양자녀의 학살 등 아동 학대를 금지하기 위해 1933년 10월부터 「아동학대방지법」을 실시한 것과 비교 된다.²⁸⁾ 조선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28) 『동아일보』 1933.3.29. 「아동학대방지법 10월 1일부터 실시」

미뤄지다²⁹⁾ 끝내 법을 제정하지 못했다.³⁰⁾

당대 언론이 수양 관계 맺기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한 말은 '수양녀 계약'이었다. 계약은 주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하는 당사자 간의 의무 약속을 정할 때 쓰는 말이다. 그렇다면 양자 사이에는 어떠한 의무 약속이 있던 것일까. 친부모가 어린 딸을 보낼 때는 대체로 먹고 살길 없는 딸을 맡아 주는 것이 고마워서 대가 없이 수양부모에게 보낸다. 1930년대 이후에는 소액의 돈을 받으면서 수양녀 기한을 정하기도 했다. 13세 여아가 30원³¹⁾, 14세가 10원³²⁾, 16세가 50원³³⁾, 14세가 20원³⁴⁾을 친부모에게 주고 수양녀가 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모두 기생이나 요정 업주에게 보내진 경우다. 마지막 사례의 경우 친부모가 중간소개인에게 속아 '수양녀 명목의 작부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딸을 요정 주인에게 넘겼다고 한다.

계약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는 경우는 '수양녀 그만두기'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딸이 학대를 당했다거나 '매음'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친부모가 딸을 되찾으려고 하는 경우, 수양부모는 '양육비'나 '수양료'를 요구하며 친부모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1933년 딸이 학대받는 것을 알고 친부가 되찾아가려하였으나 일본인 수양부가 매일 40전씩 4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³⁵⁾ 한편 12세의 양녀를 들인 수양모는 “밤늦게까

29) 『조선일보』 1933.8.24. 「아동학대방지법」; 『조선일보』 1934.6.29. 「시기상조 이유로 소년 교호법(敎護法) 불시행」

30) 『동아일보』 1940.6.2. 「아동문제관련 일(一)」

31) 『동아일보』 1934.12.6. 「휴지통」

32) 『매일신보』 1935.1.11. 「기생에게 속아 몸이 팔렸다고」 1932년에 친모에게 10원을 주고 수양녀를 들인 수양모는 수양녀에게 2년 간 '소리를 가르쳐' 음식점에 150원을 받고 팔았다.

33) 『동아일보』 1937.11.4. 「방매(放賣)된 육친애의 비애」 이때는 7개년이라는 기한도 약정되었다.

34) 『동아일보』 1938.8.31. 「이(二) 농중조 고비(高飛)」 이때에도 6개년 기한이 약정된다.

35) 『동아일보』 1933.5.21. 「실부에게 부양료 청구, 평소 학대증거 역연, 피해아동 정

지 별별 심부름을 시키고” 13세부터는 ‘밑매음’을 강요하여 아이가 14세 때 친가로 돌아왔다. 그러자 수양모가 친부에게 “아이 양육비로 매월 20원씩 계산하여 합계 38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³⁶⁾

결국 수양녀의 생존 비용들은 양육비 명분의 빚이 되어 ‘수양녀 그만두기’를 거의 불가능하게 했다. 식민지 경제정책에 따른 농가 경제의 점층적 하락 속에서 빈곤 농가는 수양녀라는 명분으로 딸을 보냈고, 수양부모라는 명분의 소개업자나 포주들은 10대 여성들의 몸을 매개를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수양녀 계약’은 합법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불법으로 단속된 것도 아니며 그 과정에서 생긴 빚은 수양녀가 채무자로서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일본 내지의 재판에서 인신의 자유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예기생업(藝妓稼業) 계약에 따라 생긴 빚은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으나³⁷⁾, 조선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진 적이 없다. 1939년 수양녀 등의 명목으로 전국에서 100여 명의 여성을 데려와 되팔았던 유괴범 하운명 사건의 경우, 여성들이 되팔리는 과정에서 생긴 빚을 그 친부모들이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여 경찰이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³⁸⁾ 경찰이 업주와 피해자의 수양 관계는 끊을 수 있어도 양육비 명목의 빚은 위약금으로 인식하여 채무가 남는 돈으로 규정했던 것이다.³⁹⁾

양순은 5세 때 수양녀가 되어 학대 속에서 가사 노동에 사역되었다가 1933년 5월 16일 9세의 나이에 칼에 찔려 살해당한다.

36) 『조선일보』 1934.8.23. 「수양녀로 말아가지고 매음 강요된 양모」

37) 「判決例: 芸妓稼業と前借金の性質」, 『警務彙報』 76, 1914. 7., 59쪽.

38) 『조선일보』 1939.3.8. 「매신(賣身)의 계약은 무효나 새로 지어 놓은 빚이 걱정」

39) 『朝鮮新聞』 1940.9.8. 「秋晴に放たれた收養女の歡び」

II. 인신매매 문제로서 '수양녀' 비판과 식민권력의 대응

1. 공사창 계약 구조와 '수양녀' 문제

1930년대 불경기와 빈곤을 배경으로 여성매매가 조직화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양녀 결연(養女緣組)' 또한 일반화되었다. 이때 양녀로 보내진 여성들은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사역되거나, 성매매를 강제당하거나,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거나 해야 했다. 1939년과 1940년 사이 종로경찰서에서 '수양녀 제도'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 “취조 경관을 가장 놀라게 한 표본적 수양모” 장정애가 친부모 또는 수양녀들과 맺은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⁴⁰⁾

- (가) 수양모는 수양녀에 대한 일체 비용을 부담함
- (나) 가무음곡의 견습 중에는 형편에 따라 지방의 요리점으로 혹은 음식점으로 출장을 시키더라도 아무 이의가 없고 그 수입은 전부 수양모 소유로 할 것
- (다) 해약하는 경우는 계약금과 비용 일체를 매달 15원씩 반환할 것

이때 장정애가 데리고 있던 수양녀 9명은 모두 작부, 기생, 여급 또는 '밀매음'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 외에 가시자시키 업자가 수양녀를 들여 자기 업소에서 '밀매음'을 시키거나⁴¹⁾ 수양부모로부터 수양녀를 창기로 사기도 하였다.⁴²⁾

40) 『매일신보』 1940.9.20. 「폭로된 청춘지옥」 장정애의 이름은 가명으로 보도되었다.

41) 『조선일보』 1928.4.2. 「세상에 나면서 생부모 모르고 독장 하에서 매음을 강제」

42) 『조선일보』 1939.3.5. 「불법계약에 유린된 수양녀의 운명 기구」; 『조선일보』 1939.3.15. 「수양녀 구출의 손」 하운명도 여성을 '수양녀' 명목으로 유괴하여 창기 등으로 매매했으며, 같은 해인 1939년 또 하나의 대규모 유괴범으로 검거된 배장언도 같은 방식으로 여성매매를 하였다.

포주가 창기에게 성매매 방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다는 가시자시키업은 합법적 성매매업으로 사회적으로는 흔히 유곽으로 불렸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고용된 작부와 여급, 권번에 소속되어 요리점에 불려가 일하는 기생 [법률상 예기]은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식민지 경찰은 이들을 사창(私娼)으로 분류하여 그 성매매를 관리하고 있었다. 경찰에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사창 중에서도 ‘밀매음’으로 치부되어 금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곧 근대 일본의 성매매 관리제도인 공창제는 경찰에 등록된 공사창을 아울러 시행했던 것이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경찰은 예창기, 작부, 여급의 계약관계나 성병검진, 외출 등의 문제를 관리했다. 경찰의 관리 감독 속에서 수양부모나 업주의 지속적인 여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는 공사창의 형식적인 계약구조, 합법과 무법, 위법을 넘나들며 형성된 업자들의 여성매매 메커니즘, 그리고 이에 대한 경찰의 묵인과 친(親) 업자 편향의 사건 대응 속에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언론은 수양녀 명목의 여성매매를 조선 사회의 나쁜 관습으로 치부했지만, 이는 일본사회에서도 ‘종래 관행으로 이어지던 폐풍’으로서 비판 받아 온 것이었다.⁴³⁾ 일본에서는 근대 국가 성립 직후인 1872년 마리아 루스호 사건을 계기로 예창기의 노예 상태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⁴⁴⁾,

43) 內務省秘第46號 警保局長ヨリ廳府縣長官宛,「藝娼妓ノ養子縁組届出二關シ當事者へ警告方ノ件依命通牒」1919. 3. 18. (荻野富士夫,『特高警察關係資料集成』24, 不二出版, 1993, 289쪽)

44) 청나라 노동자를 싣고 마카오에서 페루로 가던 마리아 루스 호가 수리를 위해 1872년 7월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요코하마항(横浜港)에 입항했는데, 청나라 노동자 한 명이 탈출하여 영국 군함으로 도망쳤다. 이 문제를 놓고 요코하마 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던 일본은 청나라 노동자 상황이 국제법 위반인 노예와 같다고 하여 풀어줄 것을 판결했다. 패소한 페루는 일본에도 노예 매매와 같은 예창기 제도가 있다고 항의했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형식적이거나 해결하지 않을 수 없어 1872년 10월 태정관 포고 제295호로 「예창기해방령」을 공포했다. 마리아 루스호 사건은 일본이 인권 개념을 수용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 이로써 동아시아

사실상의 여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양녀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872년 10월 태정관 포고(제295호) 「예창기해방령」에 이어 사법성에서 제22호 포고 “타인의 자녀를 금전대차상담상 양녀의 면모를 갖춰 창기, 예기 행위를 시키는 자는 실제상 인신매매이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공포하였다.⁴⁵⁾ 일본에서는 인권 문제를 따지기 시작한 1872년에 빛을 발생시키는 양녀 관행을 사실상의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명시했던 것이다. 1911년에는 대심원에서 게이샤(芸者)[법률상 예기]의 양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⁴⁶⁾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 경찰 사이에서도 공유⁴⁷⁾ 되었으나 일본이든 식민지 조선이든 양녀를 매개로 한 여성매매는 계속 ‘관행’으로 이어졌다. 일본 내지에서는 재판소 밖에서 양녀 매매가 지속되었고⁴⁸⁾,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같지 않았다. 우선 일본 민법에서는 양녀 입적이 가능했고, 양부모는 법률상 친권을 행사하여 양녀 매매를 했다. 일본의 가족제도 하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었고, 친권 앞에서 자식의 의사는 법적으로 무력했다. 예창기는 법적 주체로 간주되지 않

에 인권 개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법적 형식적인 귀결로서 「예창기해방령」이 공포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00년 내무성령 제44호 창기단속규칙(娼妓取締規則)으로 일단락되는 것이다(동아시아 인권 개념 수용 문제로서의 마리아 루스호 사건은 송경호, 「마리아 루스호 사건을 통해 본 메이지 일본에서의 인권 개념 수용」,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1(1), 2022, 참조).

45) 廓清會, 日本基督教婦人矯風會, 『國際聯盟と醜業婦女賣買』, 日本基督教婦人矯風會, 1925, 13쪽.

46) 『藝娼妓の養女制度と痛快なる大審院の判決』, 『廓清』 1(3), 1911.9., 46-48쪽.

47) 増田道義, 「公娼制度竝に藝娼妓自由廢業に關する若干の考察資料(3)」, 『警務彙報』 334, 1934, 37쪽.

48) 일본에서는 양녀 매매 기사가 1930년대에도 나오고 있으며(「養女縁組で公然人身売買」, 『廓清』 23(1), 1932, 28쪽.), 위의 마스다 미치요시(増田道義)도 같은 글에서 “대심원이 여러 번 양자 결연 구조의 무효를 선언했지만 변함없이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 습관이 있는 것은 탄식할만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았으며, 자녀 매매로 인한 친권자의 재산 축적은 일본 민법 하에서 인정되었다. 일본의 매춘방지법 시행 다음해(1958년)에 『매춘과 인신매매의 구조』라는 책을 발간한 긴키대학(近畿大学) 법학부 교수 마에다 신지로(前田信二郎)는 ‘가족제도와 매춘의 법리’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노예적 양자제도”에 대해 매섭게 비판했다.⁴⁹⁾

마리아 루스호 사건은 예상기해방령을 낳았고 예상기는 소와 말의 신분으로 취급되어 법적 주체로 간주되지 않았다. …… 친권자는 합법적 권한에 기초해 자식(子)의 고용계약서에 조인했고, 자식을 대신하여 임금이나 전차금을 수령했다. 그때 자식의 동의는 부모의 절대권력 앞에서 사실상 무시되었고 자식은 부모의 일신상의 이유로 매각되었으며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됐다. …… 전차금에 기반을 둔 몸팔이는 예상기의 경우 새로운 부모자식 관계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한 ‘노예제 양자’ 자체였으며, 포주라는 부모, 창기(아이 자산)이라는 자식 관계는 의제적(擬制的) 혈연관계를 통해 인신의 영대(永代) 매매 또는 무임노동의 무한 착취적 기회를 창설하는 것에 다름없다.

본래 일본 고유의 양자제도에서는 자식의 의사를 무시하고 양자결연을 맺었고 사실상 영대 매매가 목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자식의 의사는 법적으로도 무시되었다(메이지 민법 843조). 그리고 자식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884조)에 편승해 드러내놓고 인신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적으로는 일본 산업자본, 사적으로는 매춘 상업 자본의 축적에 ‘공헌’했다.

일본 공창제도는 일본 봉건제적 가족조직의 위계 속에 절대주의적 보호 간섭의 지배 구조와 노예적 양자제도를 통한 무한착취 기구를 편입시킨 비용 전담 자본의 인신매매 상업주의이다. 이 실태야말로 헌법과 인신보호 입법, 형법과 노동법과 민법 등 모든 정당한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자 국제조약을 통해서도 세계적 규모로 금지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49) 前田信二郎, 『売春と人身売買の構造』, 同文書院, 1958, 37-38쪽. ‘노예적 양자’ 표현에는 민법 전문의 일본 도쿄대 교수이자 변호사인 가와시마 다케요시(川島武宜)의 주석이 달려있다.

위의 지적과 같이 근대 일본에서 예창기는 법적 주체가 아니었다. 일본의 가족법에서는 친권자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으며, 업주들은 양녀를 입적하여 친권을 행사하였다. 일본의 창기단속규칙 제3조는 성년자가 창기가 되고자 할 경우 동일 호적 내의 존족친(尊族親)이나 호주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미성년자는 이 외에 친부, 친부가 없을 경우 친모, 친부모가 없을 경우 친조부, 친조부가 없을 경우에는 친조모의 승낙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다.⁵⁰⁾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 양녀 입적을 통한 여성매매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조선의 업자들은 어떻게 수양녀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까. 조선의 성매매 관리 규정인 「가시자시키창기단속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은 제16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창기업을 하려는 자는 본적, 주소, 씨명, 기명(妓名), 생년월일 및 생업(稼業) 장소를 기재하고 또한 가시자시키 영업자의 연서를 받은 신청서를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 스스로 나아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1. 부친의 승낙서, 부친을 모를 때 사망했을 때 집을 떠났을 때 또는 친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을 때는 집에 있는 모친의 승낙서, 모친도 사망했을 때 집을 떠났을 때 또는 친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을 때는 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 성년자의 경우 호주 또는 부양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승낙할 자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⁵¹⁾

일본 내지의 관련 규정과 비교했을 때 조선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50) 大藏省印刷局, 「內務省令 第44號 娼妓取締規則」, 『官報』 5177, 1900.10.2., 17쪽.

51) 「朝鮮總督府 警務總督部令 第4號 貸座敷娼妓取締規則」, 朝鮮總督府, 『官報』 1095, 1916.3.31., 446쪽. 작부나 예기가 되는 조건도 같은 내용이다. 단 창기는 남편이 없는 자만 가능했던 것에 견주어 작부나 예기는 유부녀도 가능했으므로 “남편이 있는 부녀는 남편의 승낙서” 조항이 추가된다(「朝鮮總督府 警務總督部令 第3號 芸妓酌婦芸妓置屋營業取締規則」 제1조 1항, 朝鮮總督府, 『官報』 1095, 1916.3.31., 443쪽).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친부모가 없으면 친조부모의 승낙서를 첨부했음에 반해 조선에서는 친부모의 승낙서 정도만 요구되었다. 조선과 일본 모두 친권자가 여성이 창기가 되는 것을 결정하고 있으며, 일본에 비해 조선에서는 친조부모가 그 친권 행사자로서 빠지고, 후견인이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친권을 대리하는 이 후견인의 자격은 불분명하다.

조선에서 친권 개념이 등장하고 유통된 것은 통감부가 1908년부터 조선 관습을 조사하면서부터이다. 그 내용은 1910년 12월 『조선관습조사보고서』로 발간되었는데, 일본인 조사관들은 ‘한국 풍속은 자식이 절대적으로 아버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며, 아버이는 그 직업을 선정하거나 거소를 지정하고 감호, 징계를 한다. 또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상의 행위에 대해 자식을 대표하는 관습이 있으므로 친권을 인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부나모가 친권을 행사함에는 재가(在家)의 경우만으로 비재가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관습’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파악한 조선의 관습은 1921년 「조선민사령」 제11조가 개정될 때 일본 민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친권’이 법적 제도로 기능했다.⁵²⁾ 친권 행위자는 일본과 차이를 두지만, 친권의 권한은 일본에 준해 절대적 권력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서 창기가 될 때 친권 행사는 집에 있는 친부모, 후견인이 권한을 가졌다.

이 때문에 조선의 수양부모들은 수양녀를 데려올 때 친부모의 승낙서를 받아들였다. 수양녀에게 불법적으로 ‘밀매음’을 시키는 것보다 합법의 형식을 가장하여 예창기, 작부를 시키거나 수양녀를 되파는 것이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수익을 위해서도 ‘안전’했기 때문이다. 수양부모가 예창기,

52) 친권에 대해서는 홍양희, 「누구/ 무엇을 위한 ‘친권’인가: 식민지시기 ‘친권’의 법제화와 가족 정치학」, 『한국여성학』 33(1), 2017, 242-255쪽 참조.

작부 계약을 할 때 친부의 승낙을 따로 받거나⁵³⁾ 애초에 감언이설로 속여 계약서에 친부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⁵⁴⁾ 그러나 인신매매 업자가 전문화되고 조직화될수록 도장이나 호적, 승낙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위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 내막이 실로 암담하기 짝이 없는” 소개소들⁵⁵⁾이 개입해 있었다. 대규모 유괴조직을 이끈 하운명과 배장언의 경우 딸을 데려올 때 부모로부터 ‘백지위임장’을 받아 마음대로 친권자의 승낙서를 위조해 쓸 수 있었다.⁵⁶⁾ “이 계약서란 법의 검안으로 보면 훌륭한 문서위조 사기 등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기생이 된 수양녀들은 “대개 무지한 농민의 딸로서 자기와 포주 간에 체결한 예창기 영업 계약서가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저 무형의 쇠사슬에 얽힌 채 포주의 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⁵⁷⁾

이처럼 수양부모 명목의 인신매매 업자들은 법적 친권자가 아니어도 수양녀에 대한 친권 수준의 매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가족제도, 공사창 제도, 소개업 단속 제도, 일본에 견주어도 거의 없다시피 한 인신매매 및 아동학대 방지 정책, 경찰의 태도 등을 배경으로 수양녀를 매개로 한 여성매매가 메커니즘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국제연맹 여성아동매매 조사위원회의 양자문제 조사와 일본의 대응

19세기 말부터 이슈화된 국제적 인신매매를 배경으로 국제사회는 아동 및 여성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1904

53) 『매일신보』 1928.5.12. 「기생이 포주 걸어 강간죄로 고소」

54) 『동아일보』 1938.8.31. 「이(二) 농중조 고비(高飛), 화류향의 이면에 숨은 눈물!」

55) 『매일신보』 1939.12.3. 「인사소개업을 명랑계」

56) 박정애, 「일제침략기 인신매매의 구조와 성격」, 289-290쪽, 299-300쪽.

57) 『조선일보』 1939.3.15. 「수양녀 구출의 손」

년과 1910년, 1921년, 1933년에 이와 관련한 국제조약을 맺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국제연맹은 여성아동매매문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 지구적으로 인신매매 실지 조사에 나섰다.⁵⁸⁾ 조사위원회는 미국 사회위생협회 국장인 배스컴 존슨(Bascom Johnson)을 의장으로 하여 1924년부터 1926년 사이 유럽 및 미국 등 지역을 조사하고 1927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1930년 5월 국제연맹 이사회에서 동양(the East) 조사가 결정되고 같은 해 10월에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싱가포르, 태국, 인도차이나 등을 조사하였으며 중국 각 지역을 거쳐 1931년 6월 5일 조선에 들어왔다. 조사위원회의 일정은 경성에서 이를 조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이었다.⁵⁹⁾

일본은 조사위원회의 동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일본에 대한 조사에 세밀하게 대비했다. 조사위원회는 각 지역의 인신매매 상황을 묻는 공통질문지를 미리 배포했고, 일본은 이에 대해 관계자끼리 대답을 사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⁶⁰⁾ 공통질문지에는 여성아동매매를 초래하는 배경으로서 양자에 관해 질문하는 항목이 있었다. 세부항목의 행정 및 입법에 대한 질문으로서 제13번이 “아동을 부도덕한 목적의 이용에서 구제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취한 일이 있는지 진술하기 바람(아동을 저장잡기, 아동과 다른 물건

58) 국제적 인신매매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응, 여성아동매매 금지를 위한 국제연맹의 조사와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小野沢あかね, 『近代の日本社会と公娼制度：民中史と国際関係史の観点から』, 吉川弘文館, 2010. 참조. 이 연구는 국제연맹과 일본의 관계를 주로 다뤘는데, 당시 국제관계상 일본의 일부로 취급되었던 식민지 조선이나 대만, 조차지 관동주의 문제 또한 다루되 탈식민지 관점이 빠져있는 한계가 있다.

59) Report to the Council, League of Nations Commission of Enquiry into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in the East), Dec. 10, 1932., pp.11-15.

60) 鈴木裕子, 「東洋婦人兒童売買實施調査団と国際連盟における婦人売買問題-「婦女禁売」問題と日本政府の対応を中心に-」,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2006, 715-716쪽.

교환, 양자 제도가 존재하는 지방에서 특히 그러함”의 내용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 문제의 부가 질문으로서 “위원회는 적절한 사례가 있는 경우 아동이 매매자나 기타에 의해 부도덕한 목적으로 표면상의 양자 또는 직업계약 명목으로 외국으로 도항한 사실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기 원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⁶¹⁾

이 질문에 대해 조선총독 관방 의사과는 다음과 같은 회답서를 준비했다.

(13) 해당 사항 없음⁶²⁾

양자 제도를 매개한 여성아동의 매매나 그 구체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조선총독부가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한 것은 무성의 또는 회피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답변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1931년 6월 5일 조사위원회가 조선총독부 관계자를 만나서 조사했을 때 13번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오갔다.

존슨 : 양자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

미하시(三橋) 경무국장 :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청 또는 시청에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아동은 대부분 동족의 양자를 취한다.⁶³⁾

61) 外務省 条約局 第三課, 「東洋ニ於ケル婦人兒童売買實地調査委員會質問集要約」 1930.11.(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明石書店, 2006, 12쪽)

62) 朝鮮總督官房外事課, 「東洋ニ於ケル婦人兒童売買實地調査委員會質問ニ對ケル回答(朝鮮ノ分)」, 1931.(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23쪽)

63) 朝鮮總督府ニ於ケル調査會議事録要記, 「東洋ニ於ケル婦人兒童売買實地調査委員」 1931.6.5.(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86쪽)

이때 미하시 경무국장의 대답은 의도적으로 질문의 맥락을 왜곡한 것이다. 존슨은 여성아동 매매와 관련된 질문을 한 것이고, 미하시는 일반적으로 가계 계승을 위한 남아 입적에 대한 대답을 했다. 조선에서 여아 입적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1939년과 1940년에 경기도 경찰부를 중심으로 조선의 ‘수양녀 제도’가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존슨은 미하시의 대답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일본으로 넘어온 조사위원회가 1931년 6월 16일 도쿄 내무대신 관저에서 관계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 질문했을 때 츠치야(土屋) 경보국 경무과장은 ‘추업[醜業, 성매매] 목적을 위한 양자 결연은 당국에서 법령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대답한 것이다. 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조사위원회는 당국이 부도덕한 목적의 양자결연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추가 질문을 했다. 츠치야가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대답하지만 존슨은 세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추궁한다. 그리고는 “양자결연이 거부된 사례는 매우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⁶⁴⁾ 질문하는 쪽이나 대답하는 쪽이나 조선에서의 태도와 눈에 띄게 비교된다.

조사위원회는 1932년 12월 작성하여 1933년 1월에 국제연맹 이사회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일본의 ‘입양’ 부분에 대해 작성하였다. 주로 양녀 입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내지와 대만의 실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조선의 상황은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게이샤로 키울 목적으로 어린 소녀들을 입양하는 관습은 일본 제국 전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14세에서 15세의 잠재적 피해자들이 다른 지역에

64) 東京内務大臣官邸ニ於ケル調査會議事録要訳, 「東洋ニ於ケル婦人兒童売買實地調査委員」1931.6.12.・13・16.(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72-73쪽)

있는 고용주의 친척이나 친구의 가족에게 거짓으로 입양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서술했다.⁶⁵⁾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동양의 국제 인신매매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술하면서 성매매 업소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거의 예외 없이 동양의 인신매매 업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인신매매 업자를 가장 신뢰하고 이들에게 친권을 맡기면서 자신의 보호자로 여길 때가 간혹 있다. …… 인신매매 업자들의 사업 조직을 공격한다면 즉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비밀 인신매매 업자들의 시장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조건들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인신매매 업자의 가장 확실한 시장은 면허 또는 허가받은 성매매 업소이다.⁶⁶⁾

식민지 시기 언론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녀 매개의 여성매매 관행은 조선이나 일본이나 각자의 고유한 폐풍으로 인식했다.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비난의 초점은 친부모나 수양부모의 비정(非情)함에 놓인다. 그러나 국제연맹 조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여성아동 매매의 구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여 공통질문 항목으로 설정했으며, 조사 결과 인신매매 업자들이 친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공권력은 “인신매매 업자들의 사업 조직을 공격”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의 경우 창기제도⁶⁷⁾ 폐지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것이다.

65) Report to the Council, pp.75-76.

66) Report to the Council, p.93.

67)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국 일본의 성매매 관리제도는 경찰 등록 공사창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신매매 대책은 주로 공창(=창기) 폐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공창의 사창화(=창기의 작부화)가 대안으로 주장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나 일본에서 합법 성매매 제도 폐지(폐창, 廢娼) 문제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며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했던 것이다. 이러한 폐창론은 종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조사위원회의 질의응답과 실지 조사는 각 지역의 공권력 및 관계지들과 사전조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시되었다. 일본 내지의 경우 외무성 및 사법성과 내무성, 그 가운데에서도 경찰이 적극 대응했으며 그 외 폐창 운동가들이 협조했다.⁶⁸⁾ 그러나 식민지 조선은 일본이 1925년에 비준한 「여성 및 아동 매매 금지 조약」(1921년 국제연맹 체결)에도 적용 제외 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조사위원회의 관심에서도 먼 지역이었다. 일본의 폐창운동가들 또한 식민지의 인신매매 문제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⁶⁹⁾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총독부 관계자들의 무성의하고도 맥락 없는 답변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양녀 제도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미하시 경보국장의 답변은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녀 입적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에서 수양녀라는 명목의 여성매매가 활발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와 일본의 ‘여성아동 매매를 위한 양자 문제’에서 이 문제는 해당 없는 문제로 치부되었다. 양녀 문제를 국제사회와 일본 공권력이 대응해야할 구조적인 문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맺음말 : 지속되는 미성년 여성 착취

1930년대 업자의 여성매매 확대를 배경으로 식민지 조선의 예창기, 작부, 여급이 크게 늘어났다.⁷⁰⁾ 특히 조선인 예기, 작부의 증가가 눈에

합법 성매매가 폐지된 이후 더욱 활발해진 인신매매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제국 일본의 합법 성매매 제도를 공창제가 아니라 창기제도라고 표기한다.

68) 小野沢あかね, 『近代の日本社会と公娼制度』, 제2장과 제3장 참조.

69) 鈴木裕子, 「東洋婦人兒童売買實施調査団と国際連盟における婦人売買問題」, 713쪽.

70) 1930년 9,320명이었던 이들의 수는 1937년 16,78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떡였으며⁷¹⁾, 식민지 언론은 수양녀 매개의 여성매매 사건에 대해 빈번하게 다루었다. 그럼에도 부모 탓, 업자 탓만 하면서 손을 놓고 있던 경찰이 수양녀 문제에 나선 것은 전시 동원 체제에 발맞춰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1938년 5월 국가총동원체제가 시작되면서 여성도 전시 노동력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1939년부터 노무동원계획에 기초하여 노동 동원이 본격화되었고 조선인 남자가 노동력과 병력으로 내몰려진 틈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 여성 인력이 국가 자원으로 포착되었다.⁷²⁾ 남의집살이 하는 가사사용인과 함께接客업자⁷³⁾가 '불요불급한 직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들을 전시 산업에 전업(轉業)시킬 계획을 세웠다.⁷⁴⁾ 이 과정에서 1939년 하운명과 배장언 같은 인물이 이끄는 대규모 유괴조직이 검거되었으며, 인신매매를 일삼는 소개업도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예창기, 작부 모집통제를 포함하는 조선직업소개령을 새로 제정하여 “꽃과 같은 처녀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개소의 마수에 걸려 그 전정을 망치고 도탄에서 헤매게 되는 길”을 “철저히 단속 하여 인적 자원을 아끼는 의미에서도 산업 전선에 이용할 수 있는 처녀들을 철저히 보호하게 되리라”고 선전했다.⁷⁵⁾

(『在朝關連業者·接客女性通計(1906-1942)』, 『統監府通計年報』『朝鮮總督府通計年報』(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上〉』, 785쪽). 조선총독부가 낸 이 통계가 경찰에 등록되어 있는 공사창의 수입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밀매음' 사례까지 포함하면 성매매에 내몰린 여성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71) 1931년 이른바 만주사변 발발로 인한 재조일본인 여성의 만주 이동, 그리고 조선 내의 실업 및 빈곤화가 그 배경으로 보인다.

72) 外村大, 『戰時下朝鮮人女子勞務動員の実態』,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748쪽

73) 예창기, 작부, 여급과 이들을 고용하는 가사자시키, 음식점, 요리점, 카페 업자를 말한다.

74) 이아리, 「일제하 '가사사용인'의 등장과 그 존재 양상』, 666-667쪽.

75) 『매일신보』 1939.12.3. 「인사소개업을 명랑케」 1940년 1월 조선총독부 제령 제2호로 공포된 조선직업소개령에 따라 노무자의 원활한 공급과 배치를 위해서 예창기, 작부의 모집 사무를 통제하도록 하였다(박정애,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이로써 식민지 경찰이 나선 ‘수양녀 제도’에 대한 비판과 ‘수양녀 해방 운동’이 공론장에 등장했던 것이다. 이 시기는 중일전쟁이 더욱 확대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을 배경으로 일본의 파쇼적 ‘신체제운동’에 따른 시국 정책이 한층 강화된 시기였다. 경기도에서는 1940년 9월 1일부터 ‘유흥향락가’ 금지령을 실시하고 단속방침을 공지하였는데, 그 가운데 “수양녀의 해방. 각 경찰서에서는 10월 이내로 이를 해산케 하고 권번 행위도 폐지시킬 것”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⁷⁶⁾

그래서 경찰의 단속과 조치에 따라 ‘수양녀’는 해방되었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차금’이 피해여성들의 발목을 잡았다. 인신의 자유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빚은 갚지 않아도 좋다는 일본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전차금’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수양녀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은 명령적으로 단호 처리”하겠다는 본정 경찰서도 “전차금 관계 같은 것은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리라”고 했다. “수양부모도 인간적 양심으로 돌아와 생각해볼 문제이며 또 돈을 쓴 친부모 측으로서도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⁷⁷⁾ 이에 ‘수양부모’들은 여성을 되파는 것으로 ‘불이익’을 피하려 했고⁷⁸⁾, 이러한 이유로 하윤명 사건 때 국외로 되팔렸던 피해자 가운데에는 산동성의 담경(畚鏡) 위안소로 보내진 사례도 있었다.⁷⁹⁾ 중일전쟁 이후 국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출신지 소재 및 출국지와 입국지

관리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9, 178-179쪽.)

76) 『매일신보』 1940.8.31. 「향락가 금령 발동」 전시기 유흥업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박정애, 「총동원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유흥업’ 억제정책과 조선의 접객업 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17, 2009, 참조.

77) 『매일신보』 1940.9.5. 「양심에 호소할 뿐, 수양녀 해방에 따른 금전관계」

78) 『매일신보』 1940.9.15. 「친딸을 가장코 전매(轉賣)」; 『매일신보』 1940.9.17. 「해방령에 전을, 수양녀를 전매」

79) 『동아일보』 1939.3.9. 「유인마 손길에 번롱(翻弄)된 방년녀」; 『매일신보』 1939.3.9. 「하윤명 유괴사건 파문 확대」

소재의 경찰에게 신분증명서나 도항증명서를 발급받고 확인받아야 했지만, 여성매매를 목적으로 전쟁지로 떠났던 업자와 피해자들은 무사히 국경을 통과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들의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명백한 인신매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외로 나갔다는 이유로 구제하기를 포기한다면 공권력이 자기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⁸⁰⁾

이처럼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제도'는 법률과 빈곤 문제, 공사창 제도와 가부장제 및 공권력의 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공권력과 언론은 이를 '조선 고래의 폐풍'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이다. 19세기부터 국제사회와 일본에서 양녀를 매개로 한 인신매매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이자 근대 인권의 문제로 인식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들은 그러한 공론장에 올라오지 못했다. 총동원체제가 시작된 후 식민지 공권력은 1939년부터 전시 인력 확보 차원에서 수양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방' 정책을 나섰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전했던 명분만큼 '인신매매되는 수양녀들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았다. 경찰의 '해방' 정책으로 인해 여성들은 전쟁 지역에 보내졌고 현지 일본군과 영사관 관계자들도 '인신매매되는 수양녀들의 운명'을 방치했다. 이 과정은 무법 가운데 방치이기도 했고,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기도 했으며, 합법의 명분 속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도 했다.

해방 후 창기제도의 폐지를 두고 당대 언론은 "수양딸 제도에 의하여 흡혈귀와 같이 가엾은 여성의 피를 빨아먹던 소위 인육 착취제도는 해방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⁸¹⁾ 그러나 예기, 여급, 작

80) 박정애, 「해제: 제국 외 이송유괴 사건과 인신매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의 동원과 이송」,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문제 자료집Ⅱ: 제국 외 이송유괴 사건 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21, 22쪽.

81) 『독립신보』 1946.5.27. 「인육(人肉) 착취는 영원 소멸」

부 제도는 계속되었으며, 다양한 명목으로 “남의집살이” 하는 10대 여성들의 삶도 반복되었다. ‘수양녀 해방’ 조치 이후에도 미성년 여성을 착취하는 인신매매 시스템은 지속되었던 것이다.

(논문투고: 2022.4.18. 심사완료: 2022.5.23. 게재확정: 2022.5.24.)

참고문헌

〈자료〉

『독립신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朝鮮新聞』

廓清會, 『日本基督教婦人矯風會』, 『國際聯盟と醜業婦女賣買』, 『日本基督教婦人矯風會』, 1925

大藏省印刷局, 『官報』 5177, 1900.10.2

朝鮮總督府, 『官報』 465, 1912.3.18

朝鮮總督府, 『官報』 1095, 1916.3.31

『養女縁組で公然人身売買』, 『廓清』 23(1), 1932

『藝娼妓の養女制度と痛快なる大審院の判決』, 『廓清』 1(3), 1911.9

『判決例: 芸妓稼業と前借金の性質』, 『警務彙報』 76, 1914

増田道義, 『公娼制度竝に藝娼妓自由廢業に關する若干の考察資料(3)』, 『警務彙報』 334, 1934

荻野富士夫, 『特高警察關係資料集成』 24, 不二出版, 1993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上·下〉』, 明石書店, 2006.

Report to the Council, League of Nations Commission of Enquiry into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in the East), Dec. 10, 1932

〈단행본〉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식민주의와 가족·법·젠더』, 동북아역사재단, 2021

小野沢あかね, 『近代の日本社会と公娼制度: 民中史と国際関係史の観点から』, 吉川弘文館, 2010

前田信二郎, 『売春と人身売買の構造』, 同文書院, 1958

秦郁彦,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選書, 1999

〈연구논문〉

- 강이수, 「일제하 근대여성 소비지의 유형과 실태」, 『페미니즘 연구』 5, 2005
- 김군자 구술, 최희혜란 정리, 「순경 집 수양딸 노릇하다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 안부들 3』 한울, 1999
- 김학순 구술, 이상화 정리, 「되풀이하기조차 싫은 기억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 안부들 1』 한울, 1993
- 문용주, 「한국의 양자제도 연구」, 『법정논총』 6, 1958
- 박정애,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9
- _____, 「일제침략기 인신매매의 구조와 성격」,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의 이념』, 경인문화사, 2010
- _____, 「총동원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유혹업’ 억제정책과 조선의 접객업 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17, 2009
- _____, 「해제: 제국 외 이송유괴 사건과 인신매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의 동원과 이송」,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문제 자료집Ⅱ: 제국 외 이송유괴 사건 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21
- 서지영, 「식민지 도시 공간과 친밀성의 상품화」, 『페미니즘연구』 11(1), 2011
- _____, 「식민지 조선, 하녀들의 공간과 친밀성의 함의들」, 『두 조선의 여성: 신체·언어·심성』, 해안, 2016
- 소영현, 「1920-30년대 하녀의 노동과 감정: 감정의 위계와 여성 하위주체의 감정규율」, 『민족문화사연구』 50, 2012
- 송경호, 「마리아 루스호 사건을 통해 본 메이지 일본에서의 인권 개념 수용」,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1(1), 2022
- 이 봉, 「현행 한국 양자법의 몇 가지 문제점」, 『법학논문집』 3, 1976
- 이아리, 「일제하 ‘가사사용인’의 등장과 그 존재 양상」, 『한국사론』 60, 2014
- 이용녀 구술, 고혜정 정리, 「이제 여기서 죽는가보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1993
- 조윤옥 구술, 서은경 정리, 「조윤옥」,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2003.
- 조혜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양녀(養女) 화소의 양상과 의미: 『양현문직절기』와 『엄씨효문청행록』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60, 2021
- 홍애진 구술, 박선영 정리, 「얼굴이 예뻐서 남보다 먼저 팔려나갔다」, 『(50년후의 증언)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5

홍양희, 「누구/ 무엇을 위한 '친권'인가: 식민지시기 '친권'의 법제화와 가족 정치학」, 『한국여성학』 33(1), 2017

許娟姬, 「日本券番の朝鮮定着と日本芸妓の存在方式」,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3), 2014

鈴木裕子, 「東洋婦人兒童売買実施調査団と国際連盟における婦人売買問題—「婦女禁売」問題と日本政府の対応を中心に—」,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2006

外村大, 「戦時下朝鮮人女子勞務動員の実態」,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2006

[ABSTRACT]

‘Adopted Daughter’ Problem and Human Trafficking in Colonial Joseon

Park, Jung-ae

The ‘adopted daughter system’ in Colonial Joseon was deeply associated with laws, poverty issu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the patriarchal system, and the attitude of governmental authorities. However, the colonial government and press media simply perceived this system as an ‘evil custom of Joseon that continued from the past.’ Although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Japan began to consider the human trafficking problem mediated by adopted daughters as a structural problem and modern human rights problem in the 19th century, ‘adopted daughters’ of Colonial Joseon were not brought into this public sphere. After the war mobilization system was launched, the colonial government perceived the adopted daughter issue as a ‘problem’ and established a ‘liberation’ policy to secure wartime labor since 1939. Still, it did not actively aid ‘adopted daughters being trafficked’ as much as it propagated to do. With the ‘liberation’ policy of the police, women were sent to war zones, and local Japanese military and consulate authorities neglected the ‘adopted daughters who were trafficked.’ This process involved negligence amid lawlessness, connivance of illegality, and confinement of human

beings under the justification of legality.

Key words : Adopted daughter, human trafficking, suppression of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by League of Nations, advance payment, 'comfort women' of Japanese military